

의안번호	2214447
의 퇴 인	임오경의원
회 답 일	2025. 12. 15.
추 계 번호	25C6325

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제3항 (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이용)	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조제3항 (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이용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(안 제9조제3항)

- 개정안은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이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임
- 안 제9조제4항(현행법 제9조제3항¹⁾)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체육

-
- 1) 제9조(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이용) 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(이하 "각급 학교"라 한다)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중 체육관, 운동장 등(이하 "학교체육시설"이라 한다)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의 유지·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그 시설의 유지·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이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

- 다만, 개정안은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시점에서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, 학교당 지원금 및 지원비율 등을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현행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예산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음

【표】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예산 및 개방학교 현황

구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예산 (백만원)	4,131	4,131	4,131	4,198	4,246
개방학교 (개소)	155	150	121	121	298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-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assembly.go.kr